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94호 2012. 6. 18.(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50호(2012년도 개발제한구역의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5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2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464호(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함박어린이공원) 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공고) 4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478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 입법예고) 5

회							
람							

2012년도 개발제한구역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2012년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 구역의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6. 1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단위: 원/㎡)

지 목	지목별평균치	비 고	지 목	지목별평균치	비 고
전	455,619		하 천	263,439	
답	443,061		제 방	211,306	
과 수 원	-		구 거	233,281	
목장용지	-		유 지	299,875	
임 야	69,914		수도용지	112,000	
광 천 지	-		공 원	309,144	
염 전	-		체육용지	363,337	
대	1,725,193		유 원 지	738,833	
공장용지	1,017,477		종교용지	1,100,153	
학교용지	1,737,078		사 적 지	340,000	
도 로	461,893		묘 지	67,722	
철도용지	316,131		잡 종 지	309,856	
주 유 소	1,424,622		창 고	-	
주 차 장	1,305,038		양 어 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1. 고 시 일 : 2012. 6. 18.
-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등
-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 (“붙임조서” 참조)
-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동의 만료일부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4 제6항에의거 변경절차생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지적과 지적도로명팀 (☎032-810-7986 ~ 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조서

순 번	구 분	관 할 행 정 구 역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위 계	기초 간격 (m)	변경사유
					기점	종점					
1	도로 구간 변경	송도동	변경전	인천신히랑대로	남동구 고잔동 793번지	송도동 386번지	9,230	56	대로	20	도로구간 연장
			변경후	인천신히랑대로	남동구 고잔동 793번지	송도동 373번지	9,620	56	대로	20	

-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함박어린이공원) 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

공 고 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함박어린이공원)변경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6. 18.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원 개요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일	비 고
함박공원	어린이공원	연수구 연수1동 535-3번지	5,028.5	'87.11.19. (건고 제563호)	'94.7.30 (인고 제212호)	연수 6공원 (연수택지개발 시)

2. 입안 사유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함박공원	공원 재조성	-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위치변경)에 따른 함박어린이공원 형태 변경 되는 사안으로 - 연수택지개발사업 후 획일적이고 노후화된 공원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개념을 부여 공원을 재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 - 공원시설의 공간 및 동선을 재구성, 녹지의 재활용-배치로 공원의 기능을 복원하고 공원시설의 선진화 및 현대화, 디자인 등을 개선하여 공원을 새롭게 단장,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관계 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2012.06.18. ~ 2012.07.02.(14일간)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810-7271)
- 해당 동 주민센터 (연수 1동 ☎ 032-810-7603)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 47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 6. 15.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무원의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처벌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해소 및 부조리 없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 내부징계와 더불어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명시 (안 제4조)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고발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안 제5조)
- 공금횡령 범죄에 대한 고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6조)
- 고발사건을 목인한 고발책임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5일

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032-810-7056,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건의, 개선사항등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고발대상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과의 각 부서장 및 기관의 장과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업무 부서의 장(이하 “감사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범죄 행위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구청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금품수수 관련

유 형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나.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천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다.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혐의자가 혐의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구청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고발처리 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제6조 제3항 관련)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수 기관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및 공소제기 결과 등	기타참고사항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				